

영국의 보호주택과 은퇴주택의 특징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형 노인공동생활주택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유 병 선(경희대 박사후연구원) · 홍 형 옥(경희대 교수)

영국은 1990년을 탈시설화의 큰 전환점으로 하여 지역사회보호(care)와 살던 곳에서 그대로 살기(staying put)의 두가지 큰 흐름 속에서 발전해 오고 있으며,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의 대안으로 보호주택, 은퇴주택을 공급해 오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 노인공동생활주택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없는 주택유형으로 영국의 보호주택과 은퇴주택에서 그 모델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중 영국의 보호주택과 은퇴주택의 특징을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에 노인공동생활주택을 보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대상은 영국의 보호주택(seltered housing)과 매매형 은퇴주택(retirement housing)이다. 분석방법은 사회구성주의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문헌을 중심으로 내용연구를 하였다. 분석 틀은 플랭클린(Flanklin, 1998)의 5가지 맥락의 사회구성주의적 접근(구조적 맥락, 제도적 맥락, 조직적 맥락, 작업적 맥락, 상호주관적 맥락)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조적 맥락에서 영국은 보호주택에 대한 입주에 호의적이며,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주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의 분양형 은퇴주택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제도적 맥락에서 보호주택과 은퇴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서, 서비스 전달은 국민보건서비스·지역사회보호법에 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급에 필요한 건축기준 및 지속적인 관리감독기준이 마련되어 있었다. 조직적 맥락에서 노인공동생활주택의 공급 및 관리주체는 공공과 민간에서 함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비스 전달은 지역사회보호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주택 1형도 대부분 관리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적 맥락에서 개별주호는 완결형 주호로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며,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공용공간과 시설·설비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 한편, 서비스에 있어서는 보호주택 1형, 2형, 2.5형이 각각의 주택유형에 따라 제공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상호주관적 맥락에서는 관리인의 자질은 '좋은 이웃'을 넘어 '전문인'으로서의 자질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주택 내에서의 관리운영에 있어 자녀와 친척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찾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노인주택 공급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민간 시장에서 노인주택이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한국형 노인공동생활주택도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 둘째, 노인주택의 공급·건축·관리의 각 단계에 대한 법률이 정립되어 있어 보호주택과 은퇴주택이 지속적인 거주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노인공동생활주택 도입 초기부터 제반 법률의 체계적인 정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소규모의 지역단위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노인공동생활주택이 단지 내에서 서비스가 해결되기 보다는 주변과 연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노인공동생활주택의 고립화를 막는 운영방식을 배울 수 있다. 넷째, 각종 물리적인 시설, 설비, 개별주호에 대한 기준과 서비스 기준이 정해져 있어 이를 관리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다섯째, 보호주택과 은퇴주택에서 지속적으로 자녀와 친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점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노인공동생활주택을 공급할 경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